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기 관 포항시 본청

내 용

포항시에서 2013. 7. 9. 주식회사 ◡◡◡(대표이사 L)과 계약(계약금액 6,253백만  
여 원)을 맺고 2016. 6. 24. 준공 예정으로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  
사”<sup>1)</sup>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2011. 1. 1, 구 행정안전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 4. 1.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중앙  
투자심사 결과 민자 조달계획을 구체화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3. 4. 24. 기획재정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sup>2)</sup>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1) 연장: 1.57km, 폭: 15~30m(6차로)

2)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한편 2012. 8. 30. 준공된 ㄱ 일반산업단지의 2015년 5월 현재까지 분양실적(총분양면적 175,488㎡ 중 46.7%인 82,010㎡ 분양)과 ㄴ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불투명한 점, 그리고 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1단계 개발에 총 5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진입도로는 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동시에 착공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전에 대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심사 결과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민자 조달계획이 구체화된 후 추진하여 진입도로 건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2. 11. 8. ㉠주식회사 외 2개 업체<sup>3)</sup>(이하 “건설사”라 한다)와 “포항 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협약<sup>4)</sup>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사에서 입주기업 모집 중이던 2013. 7. 9. 공사계약을 맺고 2016. 6. 24. 준공 예정으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사는 2013년 말<sup>5)</sup>까지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여 기본협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sup>6)</sup>되었고 위 관서는 2015년 5월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 247억여 원<sup>7)</sup>이 장기간(최소 4년<sup>8)</sup>) 사장되게 되었다.

3) ㉠주식회사, ㉡주식회사

4) 기본협약 주요내용: 2013년 4월까지 적합기업 33만 m<sup>2</sup> 이상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기본협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5) 기업이 유치되지 않아 2013. 5. 1. 입주기업 모집기간을 2013년 말까지로 연기

6) 2012. 11. 8. 위 관서와 3개 업체 간에 체결한 협약서 제8항에 따라 효력 상실

7) 설계용역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등

8) 2015년 5월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하더라도 2020년 5월 이후에 준공되므로 진입도로 준공 이후 4년 이상 방치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앞으로 중앙의뢰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견을  
통보받고도 선행조건 이행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투입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ㄷ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칠곡군

관 계 기 관 칠곡군 본청

내 용

칠곡군에서 2009년 6월부터 관내 일원(면적: 1,872천 m<sup>2</sup>)에 조립금속 및 전기 부품 등 저공해 첨단업종을 유치하고자 “ㄷ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사업비 3,253억 원)을 추진하였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2013. 6. 5, 구 안전행정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에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의뢰 투자심사 후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